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
①・②(생 략)	①·②(현행과 같음)
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
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	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
각 호와 같다.	각 호와 같다.
1.~16. (생 략)	1.~16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
	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
	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
	<u>입하는 투자자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
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
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	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
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	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
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	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
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	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
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	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
하여야 한다.	하여야 한다.
1.~16.(생 략)	1.~16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
②~⑤(생 략)	②~⑤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	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
①~④(생 략)	①~④(현행과 같음)
⑤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	<삭 제>
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	
<u>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</u>	
<u>지 아니한다.</u>	
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	
<u>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u>	
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	

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

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

- ①·②(생 략)
-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</u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- ④(생 략)

제40조(보수)

- ①·②(생 략)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~16.(생략)

<신 설>
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

- ①·②(현행과 같음)
-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 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 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- ④(현행과 같음)

제40조(보수)

- ① · ②(현행과 같음)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- 1.~16.(현행과 같음)

17. Cp2-E클래스 수익증권

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
-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25
-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
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

0.17

제41조(판매수수료)

- ①·②(생 략)
-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④·⑤(생 략)

제41조(판매수수료)

- ①·②(현행과 같음)
-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서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④·⑤(현행과 같음)

제42조(환매수수료)

제42조(환매수수료)

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</u> <u>다.</u>

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 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 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 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정 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

②환매수수료는 '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 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 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'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부과한다.

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

- 1. A 클래스 · C1 클래스 · C2 클래스 · C3 클래스 · C4 클래스 · C5 클 래스 · Ce 클래스 · W 클래스 · I 클 래스 · S 클래스 · CG 클래스 · Cp 클래스 · Cp-E 클래스 · S-P 클래스 · Cp2-F 클래스 수익증권 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나. 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의 30%
- 2. <u>Cp2클래스 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</u> 없음

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 권저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

①~④(생 략)

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

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

①~④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

- ①~③(생략)
-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

①~③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
<u>부 칙</u>

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